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책 임 운 영 기 관 의 설 치 ·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등 29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10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0명, 전문경력관 4명, 교수 2명)을 배정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하부조직 등에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며,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조교에 대한 임용권이 총장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수”를 “상위 2개”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67명”을 “6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방홍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58명”을 “16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452명”을 “454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300명”을 “302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87명”을 “8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94명”을 “95명”으로 하며, 같은 표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16명”을 “117명”으로 하고, 같은 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 “118명”을 “121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215명”을 “217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329명”을 “336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공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26명”을 “130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79명”을 “183명”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16명”을 “117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76명”을 “183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15명”을 “119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95명”을 “98명”으로 하며, 같은 표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94명”을 “98명”으로 하고, 같은 표 항공교통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306명”을 “31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600명”을 “633명”으로 하고, 같은 표 해양수산물재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26명”을 “27명”으로 한다.

으로 하며, 같은 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55명”을 “56명”으로 하고, 같은 표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49명”을 “52명”으로 하며, 같은 표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605명”을 “606명”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73명”을 “74명”으로 하고, 같은 표 궁능유적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215명”을 “218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250명”을 “253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97명”을 “99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수목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66명”을 “67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116명”을 “118명”으로 한다.

별표 3의 한국농수산물대학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 제2호 중 “교원”을 “교원 및 조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생략)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u>우수</u>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u>상위 2개</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u><신 설></u>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u>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u>
<u><신 설></u>	② <u>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u>

① ~ ④ (생략)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u>관의 장 및 하부조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③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⑦ 제6항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8